

세무

기수 P324- 2020 년 10 월 22 일

## 세무평론

### 중국수출관리강령법률 발표

### 기업수출준법제도 보완 시급

2020 년 10 월 17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리법>(이하 <수출관리법>으로 약칭함)을 통과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 58 호로 공포하였습니다. <수출관리법>은 2020 년 12 월 1 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중국 수출관리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수출관리에 있어서 각 행정법규에 대해 통솔 및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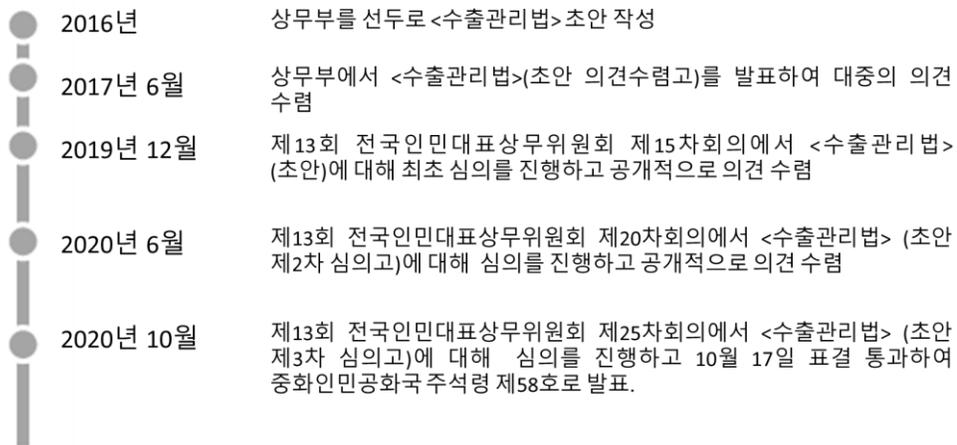
수출관리라 함은 한 나라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안전 수호와 이익 발전의 목적으로 핵, 생물, 무기 등 특정물자(관련 화물, 기술 및 서비스 포함)의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현재 수출관리는 주로 양용(两用)물자, 핵과 군용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 양용물자란 민사와 군사 용도를 겸비한 민감물자를 가리키며, 핵, 생물, 화학, 미사일 등 관련 화물, 기술과 서비스(실무 업계에서는 "核生化导"로 칭하며, "민감물자"라 통칭함)를 포함합니다.

현행의 수출관리제도는 기업 경영자에게 주체자격 관리를 진행하며 그에 상응하는 등록, 심사제도를 실행합니다.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주로 관리리스트 제도를 통해 물자에 대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며, 국가의 수출관리대상이 되는 물자와 기술은 모두 관리리스트 방식으로 열거합니다. 해관총서는 이러한 물자허가증의 수출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불법수출건의 조사와 처리에 참여합니다. 양용물자와 기술의 관련 허가증에 대한 관리는 상무부에서 기타 부서와 협동하여 전개합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수출관리는 여러 감독관리부서와 관련되며 각 부서는 업무를 분담하는 동시에 서로 협력하기도 합니다.

<수출관리법> 발표 전까지, 중국의 수출관리제도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수출관리에 특화된 전문 상위법이 부재했습니다. <수출관리법>의 발표는 수출관리에 있어서 상위 법의 부재를 채워주었습니다. 또한, 현행의 중국 수출관리제도 내에는 상이한 관리대상물자 법규와 규정 문서들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일되고 집중적인 규범체계가 결여되어 집법인원과 기업의 실무, 기업의 내부관리에 일정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수출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초안 작성부터 입법까지 4 년의 시간이 경과한 만큼 <수출관리법>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 <수출관리법> 중점 및 분석

<수출관리법>은 총칙, 규제정책, 규제목록, 규제조치, 감독관리, 법적 책임과 부칙으로 모두 5 장, 49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수출관리제도와 비교할 때, <수출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수출관리 적용 범위 명확화

### 관리물품 항목

<수출관리법>은 적용 범위에 대해 “양용물품 항목, 군사용품, 핵 및 기타 국가안전과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 관련 화물, 기술, 서비스 등 항목(‘관리물품 항목’으로 총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를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수출관리법>은 “양용물품”을 “민간용도와 군사용도를 겸비하였거나 또는 군의 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특히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공구의 설계, 개발, 생산, 사용 등에 적용되는 화물, 기술, 서비스”로 정의하였습니다. 해당 정의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양용물품의 관리통제범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관리법>은 “기타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의 이행과 관련되는 화물, 기술, 서비스 등 물자”를 관리대상물자에 포함시켰으며, 개방적인 일반조항(兜底条款)으로서 관리물품 항목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시켰습니다.

### 관리범위

<수출관리법>은 수출관리의 금지 또는 제한성 조치는 아래 단계에서 발생한 행위를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국 경내로부터 경외로 관리물품을 이전하는 경우
- 중국 국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이 해외 조직과 개인에게 관리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중, 전자는 현행 제도의 수출관리단계에 대한 규정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후자는 <수출관리법>의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미국 수출관리제도 중의 “수출간주”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중국 경내에 위치한 해외조직(대표) 또는 외국인 개인에게 관리물품 항목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수출관리법>의 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관리물품의 세관통과, 이전, 통운, 재수출 또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세관 특별 관리 지역과 수출감독창고, 보세물류센터 등 보세감독장소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수출관리법>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 중 재수출은 최초로 관리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수출관리법>은 “재수출”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므로 향후 국가수출관리부서에서 일정 시점에 지침 또는 실시세칙을 발표하여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규범 경영을 지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리주체

<수출관리법>의 적용대상은 중국 및 외국의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 등 수출행위와 관련되는 각 주체를 포함합니다.

경외 주체에 대해서는 <수출관리법>에서 새로 추가된 역외관할효력에 대한 원칙성 조항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수출관리법>에 따르면, 경외의 조직과 개인이 수출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 국가안전과 이익을 손상시키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중국은 법에 따라 그 법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수출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대등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출관리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중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나라 또는 지역에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관리법>은 수출경영자의 수출행위는 <수출관리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이외, 모든 조직과 개인은 수출경영자의 수출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행, 화물운송, 택배, 통관, 제 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을 위반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수출관리법>에 의해 관련 불법소득 몰수 및 벌금 등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관리리스트 및 수출허가제도 보완

### 관리물품 항목의 수출관리 리스트, 임시관리 및 의무

현행 수출관리제도 하에서 국가는 관리리스트의 관리물품 항목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물자를 수출할 경우, 수출경영자는 관련 부서에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실무 중에서는 상무부와 해관총서에서 각종 관리물품 항목의 수출 관리리스트를 취합하여 연도별로 목록의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자에 대해서도, 국가 관련부서는 그에 대한 임시 관리를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해당 물자의 수출경영자에게 허가신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리물품 항목 수출 관리리스트 및 수출허가제도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초 아래에서, <수출관리법>은 임시 관리물품 항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1) 수출 관리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자에 대해 임시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고해야 하며, (2) 임시 관리기한은 2년을 초과하지 않고, (3) 임시 관리기한 만기 전 적시에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임시 관리 취소, 관리기간 연장 또는 임시 관리물품 항목을 수출 관리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하였습니다.

상술한 내용 외에도 <수출관리법>은 수출경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전면 관리의 원칙을 구현 하였습니다. 즉, 수출경영자가 관련 화물, 기술과 서비스가 아래의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해야 하거나, 또는 국가 수출관리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국가 수출관리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도구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이용되는 경우
- 테러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만약 수출경영자가 수출 예정인 화물, 기술과 서비스가 관리물품 항목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국가수출관리부서에 문의할수 있으며 국가관리부서는 적시에 답변해야 합니다.

####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관리*

수출허가신청 심사 중에서 관리물품 항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는 관리부서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출관리법>에서는 동 방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으며 관리물품 항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관한 위험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 수출관리부서는 관리물품 항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해 평가,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경영자 또는 수출업체에서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국가수출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수출관리법>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업체와 최종 사용자에 대해 관리대상 명단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에 대한 관리요구를 위반한 경우
- 국가 안전과 이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관리물품 항목을 테러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관리대상 명단에 포함된 수출업체와 최종 사용자는 관련 관리물품 항목의 거래 금지, 제한, 관리물품 항목의 수출 중지 명령 등 필요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출경영자는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대상 명단에 포함된 수출업체, 최종 사용자와 거래를 진행할 수 없으며, 특수 상황이 있을 경우 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수출 관리대상 명단에 포함된 수입업체, 최종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구제조치가 있으며, 조치를 취하여 상술한 3 가지 상황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관리대상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국가수출관리부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리대상 명단에 포함된 수입업체, 최종 사용자를 명단에서 제외시킬수 있습니다.

### 주관부서 감독관리 권한 규범화

<수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수출관리부서는 <수출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시 아래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 조사대상자의 영업장소 또는 기타 관련 장소에 진입하여 조사 진행
- 조사대상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조직 또는 개인에게 질문하여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
- 조사대상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조직 또는 개인의 관련 증빙, 협의서, 회계장부, 업무서류 등 문서자료를 열람 및 복사
- 수출에 사용된 운송도구 검사, 의심되는 수출물품 적재 제지, 불법 수출물품 운송반환 명령
- 관련 물품 차압 및 압류(수출관리부서 책임자의 서면 승인 필요)
- 조사대상자의 은행계좌 조회(수출관리부서 책임자의 서면 승인 필요)

유의해야 할 것은, <수출관리법>은 해관의 수출관리대상물자에 대한 검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관은 수출화물이 수출관리 범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수출화물의 발송인에게 질의를 제기하고 국가수출관리부서에 조직 식별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출관리부서는 수출화물이 관리품목 항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결과를 제시하며, 해관은 결과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식별 또는 질의기간 내 해관은 수출화물을 통관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현행의 핵 수출, 핵 양용품 및 양용물자 허가증 관련 제도 중의 규정과 유사하며, 두가지 상황에서 해관은 모두 질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현행의 제도에는 수출경영자가 상무부에 수출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문서 발급을 신청할수 있다는 내용만 있으며, 금번의 법규는 해관이 국가수출관리부서에 조직 식별을 제기할수도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위법행위 법률책임 강화

<수출관리법>은 법률책임 장절에서 기존의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주로 아래 방면에서 체현됩니다.

우선, 새로운 관리조치의 도입으로 인해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법상황의 경우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관리법>은 수입업체와 최종 사용자의 관리대상 명단에 대한 규정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출관리법>은 수출경영자가 법을 위반하고 관리대상 명단에 포함된 수입업체, 최종 사용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수출경영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 정지명령, 불법소득 몰수, 위법 경영액의 최고

20 배에 달하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허가취소, '관련 관리물품 항목' 수출자격증 취소를 받을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유사위반 행위에 대해 <수출관리법>은 그 처벌 수위를 현저히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관리법>은 법률, 행정법규의 해관 처벌사항을 명확히 하고 해관은 <수출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련 처벌을 내린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련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관법률, 행정법규의 처벌을 적용합니다. 수출금지 화물의 불법수출에 대한 처벌을 예로 들면, <수출관리법>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래 표 참조)

불법행위	규정을 위반하고 수출금지 화물 수출,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수출제한 화물 수출, 허가증 제공 불가	
처벌근거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	<수출관리법>
법률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을 위반하고 수출금지 화물을 수출한 경우, 반송을 명하고 100 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li> <li>• 규정을 위반하고 수출제한 화물을 수출하였으며 허가증을 제공할수 없는 경우 수출화물을 통관시키지 않으며 화물 가격의 30%이하의 벌금에 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행위 정지를 명함</li> <li>• 불법소득을 압수함</li> <li>• 50 만 위안 이상의 과태료, 불법경영 금액의 최고 10 배</li> <li>•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관리대상 물자 수출경영자격을 취소할 때까지 영업정지, 정돈을 명함</li> </ul>

이 밖에 유의해야 할 것은, <수출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수출경영자의 수출경영활동 종사는 제한받거나 금지될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생산경영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동 위법 상황은 납세신용기록에 포함되어 기업의 기타 방면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수출관리 준법제도 수립 요구

<수출관리법>은 국가수출관리부서에서 적시에 관련 업계의 수출관리지침을 발표하여 수출경영자의 수출관리 내부준법제도 수립과 규범화 경영을 인도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출경영자가 수출관리 내부준법제도를 수립하고 그 운영상황이 양호한 경우 국가수출관리부서는 해당 수출경영자의 관리물품 항목에 대해 통용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편의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규정은 국가가 기업의 자발적 준법을 인도하고자 하는 정책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딜로이트의 견의

최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중미무역마찰, 브렉시트, 지역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미국수출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안전, 정보안전 등 무역 및 준법 이슈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큰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몇달간 중국은 <중국 수출금지 수출제한 기술목록> 조정, 신용불량법인리스트 작성제도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한 데다, <수출관리법>이 발표되면서 기업경영에 대한 준법요구와 법률책임은 한층 강화되었으며 기업공급망 무역 준법성의 중요성 또한 한층 부각되었습니다.

<수출관리법>은 관리물품 항목, 관리단계, 관리조치, 적용주체 등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의 수출관리제도와 비교할때 <수출관리법>은 수출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집법 수위를 강화하였으므로 수출경영자의 불법행위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의 수출관리 준법체계를 구축하고 최적화, 보완하는 것은 경영준법위험을 낮추고 내부 자원을 통합하고 내부 실무를 규범화 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수출관리법> 발표 전부터 관련 부서는 기업의 자발적 준법 인도를 위한 정책시도를 하였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양용물자와 기술경영기업의 내부 수출통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약칭함) 에서는 양용물자와 기술 연구개발, 생산 및 수출입기업의 기업내부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하여 6 가지 기본요소(아래 표의 중미 준법지침 관련 요소에 대한 비교 참조)를 제기하였습니다. 중국의 수출관리 준법 차원에서 동 <지도의견>은 기업 내부수출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보완에 유익한 참조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은 해당 기초상에서 기업 자체의 업무에 적용되는 법률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내부준법제도를 제정해야 합니다.

	중국상무부 <지도의견>	미국수출준법지침
기본요소	(1) 정책선언 작성 (2) 조직기구 수립 (3) 심사절차 제정 (4) 관리메뉴얼 작성 (5) 교육훈련 진행 (6) 자료파일 보관	(1) 경영진 약속 (2) 위험평가 (3) 수출권한부여 (4) 자료 보관 (5) 교육 (6) 감사 (7) 위반사항 처리 및 시정조치 실시 (8) 수출준법메뉴얼 작성 및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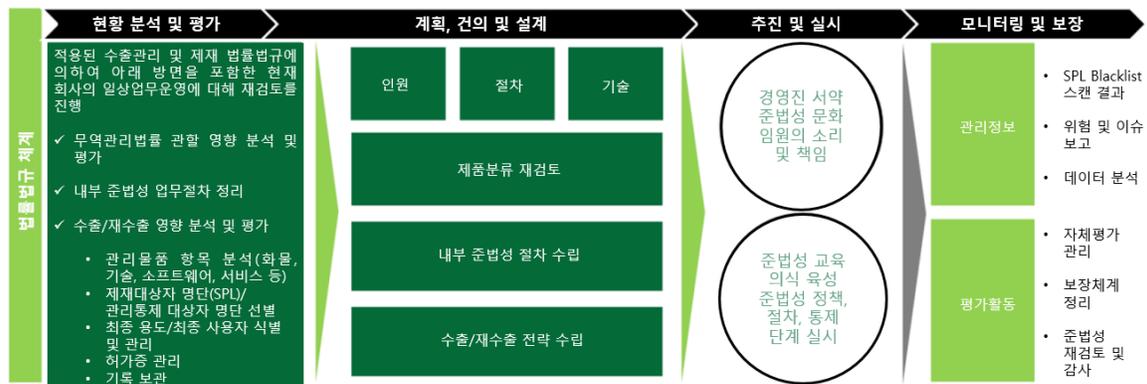
<지도의견>은 또한 <기업내부 수출통제시스템 구축 프레임> 발표에 관한 업무배치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수출관리법>의 발표와 결합하여, 상무부에서 다음 단계의 조치로 해당

업무의 추진에 착수할지 여부가 기대됩니다.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수출기업은 내부업무와 충분히 결합하여 상무부 <지도의견> 중의 6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글로벌 우수실천사례를 참조하고 내부 수출관리 준법제도를 수립하여 전체 기업조직과 업무절차에 적용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수출관리의 준법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관련 기업은 양호한 심사 및 기록보존 시스템을 구비하였는지를 주목하고 "수동적 준법"으로부터 "자발적 준법"으로 전환하여 일상활동 과정에서 사전심사에 대비하여 계약서, 기장증빙, 이메일 교신 내역, 내부심사기록 등 관련 업무기록을 보존하고 기업 내부 준법관리 조치의 투명화와 소급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증 신청 준비 단계에서 기업은 <수출관리법>에서 열거한 허가심사의 고려요소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 Cross-check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와 최종용도 관리 방면에서 기업은 <수출관리법>에 따라 업무파트너의 배경조사 업무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거래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한 실사를 중시해야 합니다. 관련 기업은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한 내부감사 및 관리제도를 수립, 실시해야 합니다.

글로벌 수출관리 준법영역의 전문 실무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기업에서 아래 방법을 참조하여 효과적인 수출관리 무역 준법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수출관리법>은 한달 후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상무부는 대변인을 통하여 관리리스트를 추가로 보완하고 발표할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수출관리법 부가법규의 입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후속 발표되는 관리리스트 및 그 부속법규 또는 지침의 업데이트 사항을 주목하여 <수출관리법>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수출관리의 일상 준법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기업 업무에 대한 새로운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제품에 대한 정리와 상품 분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관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며 <수출관리법>과

결합하여 기업의 각종 관리물품 항목(화물,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 준법 관리전략을 검토해야 함

- 적용되는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상이한 구체적 업무상황에 대해 위험식별 및 평가를 진행하여 수출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예를 들어 중국 경외에 있는 해외조직(대표) 또는 외국인 개인에게 관리대상물자를 제공하는 상황)을 식별하여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리스크 맵을 제정하며 특정 업무상황에 대한 준법관리전략과 통제점을 제정하여 수출관리 준법체계를 수립, 보완해야 함
- 관리물품 항목에 관하여 적시에 허가신청을 처리, 추진해야 함. 예를 들어 제출자료의 준비, 현지 주관부서와의 소통 등
- 경영진 및 직원을 대상으로 무역 준법관련 교육 실시
- 감독관리 동향에 따라 무역절차 및 자동화 방안에 대해 검토 및 업데이트 진행
- 필요 시 외부 전문기구에 자문 요청